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672

2026. 2. 24.
경제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6. 2. 12.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13명 발의)

나. 상정의결

- 제332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경제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2026. 2. 24.)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대표발의자 이동호 의원)

○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안 제2조)

나.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강남구청 및 소유자의 책무(안 제3조)

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및 지원 범위(안 제4조, 제5조)

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내용(안 제6조)

마.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주현)

가. 제정 취지 및 배경

○ 구민안전의 중요성

-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하는 행정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주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주민 생활과 밀접한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여 생활안전 위험요인을 예방·대비·대응·복구할 책무를 다하여야 함.
- 강남구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주거밀집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위험수목 제거사업이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았지만, 위험수목을 구민이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수목 정비를 강남구 공원녹지과가 담당하고 있으며, 그 연간 위험수목 처리량은 다음과 같음.

< 연도별 위험수목 정비사업 추진 현황 >

실적	2023	2024	2025
계	784	1,529	1,785
제거(주)	289	550	957
전지(주)	495	979	828

※사유지 위험수목 정비가 시행된 적은 없었음.

나. 검토 내용

○ 제정 목적

- **안 제1조**는 강남구민의 생활권에 식재된 수목의 상태가 양호하지 않고 위험성이 높아진 상태가 되는 경우 그 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음을 확인하는 목적 규정임.

- 조례 제명과 각 조문을 검토한 결과, 특히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통일성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어 이에 관한 수정의견을 제시함.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생활주변 위험 수목의 ———————————— ————————————.

○ 용어 정의

- **안 제2조**에 따르면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생활권 인근에 식재된 수목이면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수목임. 다만, 피해 유발 원인을 ‘바람, 비, 병충해 등 자연현상’이라고 열거하였는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이란 태풍, 강풍, 호우, 대설, 지진, 미세먼지 등 다양한 현상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임.
- ①생활안전에 위협이 될 우려가 있는 요인이 되는 각종 재난의 범위가 상위법령에 정의되어 있고, ②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관리업무 기관으로 이미 명시되어 있어서, ③원인이 되는 현상을 나열하기보다 간결한 표현으로 기재할 것을 수정의견으로 제시함.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바람, 비, 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 ————————.

○ 구청장의 책무

- **안 제3조제1항 및 제3항**은 구청장에게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제3조제1항)와 시책 추진 시 구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할 의무(제3조제3항)를 부여하는 것이고 타당하다고 보임.
- **안 제3조제2항**은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할 의무(제3조제2항)가 있다고 정하는 것임.

○ 지원계획

- **안 제4조**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구청장의 이행 여부를 의무가 아닌 자율에 맡기는 것으로 정하였음.
- 앞서 안 제1조에서는 이 조례의 목적은 강남구민의 생활안전 확보를 위한 것이고, 안 제3조에서는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의무가 강남구청장에게 있음을 강조하였으나, 여기 지원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여부에 대해서는 선택의 여지를 두었음.

○ 적용 범위

- **안 제5조**는 이 조례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는 것임. 자치법규가 적용되는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그 규정에 따른 집행이 이루어질 때 혼동이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조문 체계상 위치는 안 제4조와 순서를 변경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안 제5조제3항**에서 녹지 내 수목을 위험수목으로 진단하여 제거하는 경우 보완식재를 조건으로 정하는 이유는 다양한 연구 결과를 통해 도시지역의 녹지는 탄소저감 기여도가 높다는 점이 입증되어 있어서, 법령에 따른 규제를 준수하고 도시의 녹지 면적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것임. 소관부서에서는 이 점에 유의하여 해당 규정의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보임.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5조(지원범위 및 제외)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제2호, 제11호에 해당하는 건축물[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건축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적용한다. 1. 단독주택 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 20세대 이상 50세대 미만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4. 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산림보호구역 2. 경제림육성단지 및 기업경영림 3. 대규모 사업 부지 4. 공공기관 관리 지역 5. 관리사무소가 설치된 공동주택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지가 조경의무면적이 설정된 대지인 경우 지원 이후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 상위법령에 이미 정의된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정리하면 간결성을 확보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이 예시를 들어 권장함.
- 위의 내용을 전제로 이 사업의 지원 제외 대상을 확인하면 다음과 같음.

1) **「건축법」** [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 지원 제외 대상 >

-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 지원 불가
- 20세대 미만이고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 지원 불가
- 토지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 지원 불가
- 경제림 등 벌채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지역 – 지원 불가
- 단순 해가림, 미관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전지 요구 – 지원 불가
- 개인 조경수 관리 요구 – 지원 불가
- 가슴높이지름 20cm 미만의 소형목 관리 –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안 제6조**는 구청장이 시행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지원내용을 구체화한 것임.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수목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을 정비(제거 및 가지치기)할 수 있다. 1. 죽은 수목 2. 풍수해를 입은 수목 3. 다음 각 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수목 가.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나. 부패 및 병충해로 인한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풍수해 발생 시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과정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이미 고사(枯死)한 수목은 원인을 알 수 없으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고, 풍수해를 입은 수목은 생활주변 수목이 쓰러지거나 부러진 경우 주민이 직접 처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하여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성이 인정됨.
- 다만, 제6조 본문에는 '각 호의 수목'에 대해 처리한다고 하였으나, 실제로 각 호에 열거된 것은 '수목의 구분에 따른 처리 행위'임. 본래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려면 조문을 정비하여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실태조사

- **안 제7조**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실태를 조사할 권한이 구청장에게 있다는 것임. 다만, 구청장이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하는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추진인지 실태조사인지 다소 불명확해보임.
- 그리고 구청장이 지원을 요청할 관련기관·단체의 범위가 구체적이지 않다는 한계가 있음. 소관부서는 여기서 말하는 관련기관·단체의 자격, 지원·협조의 내용 및 범위를 구체화하여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다음은 상위법령의 용어정의에 따라 간결하게 정리한 예시임.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에게 수목진료를 받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수목관리 관련v기관·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지원 신청

- **안 제8조**는 구청장이 강남구민을 위하여 시행하는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고 신청 절차를 정하는 것임.

- 이 조문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을 어디에 어떤 방식으로 알릴 것인지, △구민의 불편을 고려해 신청기간 보다는 시행기간을 정하여 접수는 상시로 하되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대안을 검토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소관부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임.

< 규정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v신청)**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수목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별지 서식

-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하는 사유를 설명하는 '태풍 등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라는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안 제6조에 설명된 지원 내용에 따르면 '사고 예방' 뿐만 아니라, 나무가 죽거나 쓰러진 상태인 '사고 발생 후' 시점에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임.
- **별지 제2호 서식**에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어떤 자격을 가지고 무엇에 동의하는 것인지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임.

< 별지 서식 비교 >

원 안	수 정 의 견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등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1호서식]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위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동의서** 상기와 같이 사유지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따른 주민 찬성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상기 본인은 수목 소유주로서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동의합니다.

다. 종합 의견

○ 강남구민의 생활안전 확보

- 지역 현장 중심의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는 차원에서 강남구민이 일상을 영위하는 생활권 안에 발생 가능한 위험 요인을 선제적으로 또는 신속하게 조치하려는 이 조례안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이므로 조례의 제정 필요성이 인정됨.
- 제정 이후 수목 관리를 위한 강남구 예산이 투입될 경우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됨.

※ 관계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 2026. 2. 1.] [법률 제20727호]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자연재난: (생 략)
   나. 사회재난: (생 략)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의 환경계획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에 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며, 누구든지 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수습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권이 침해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와 관련된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시행 2026. 1. 2.] [대통령령 제35947호]

제2조(재난의 범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2. 그 밖에 제1호의 피해에 준하는 것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재난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피해

※ 참고 자료:

[붙임 1] 강남구 주택 현황 및 사유지 수목 관리 현황

(강남구 공원녹지과 2026. 2., 제공 자료)

□ 타 자치구 조례 제정 현황: (제정) 17개 자치구

○ (미제정) 광진구, 중랑구, 은평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강동구, 강남구

□ 강남구 주택 현황

○ 총 세대수: 245,094 세대 ※공동주택 비율 : 72%

○ 공동주택 현황: 176,898 세대

구 분	공동주택			비 고
	아파트	연립	다세대	
총 176,898	138,024(78%)	5,645(3%)	33,229(19%)	

□ 강남구 사유지 수목 관리 현황

○ 기간: 연 1회 지원(3월)

○ 사유지 유형별 처리 현황

구분	관리 인력 (유/무)	주택과 지원 현황			관리현황
		연도	단지	금액 (천원)	
공동주택 (20세대 이상 대규모 공동주택) ⇒ '주택과' 지원	유 (관리사무소)	**소 계**	**50**	**613,380**	– 단순 수목관리: 자체인력 활용 – 대형수목 관리 및 병해충 방제등 : 전문업체 의뢰 ※ 공동주택지원조례』에 의거 지자체 비용 지원 가능 (분담비율: 구 50%, 공동주택 50%)
		2024	15	232,414	
		2025	35	380,966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 주택 (소규모 공동주택)	무	-	-	-	– 수목 넘어짐 안전사고 발생시 : 소방서, 지자체 협조 – 평시 수목관리: 개별관리 또는 방치 ※ 지자체 비용 지원 없음

[붙임 2] 강남구 위험수목 처리 현황

(강남구 공원녹지과 2026. 2., 제공 자료)

▢ 공원녹지과 위험수목 관리 현황

○ 대상: 공원·가로녹지·산림·하천 등 공원녹지과 관리지역

⇒ 사유지는 토지 소유주 자체 처리

○ 기간 : 평균 2~3회 ※ 풍수해(호우·태풍) 등 유사시 추가 정비

○ 유형별 관리 현황

- 단순 수목 관리: 자체 인력(기간제근로자) 활용
- 대형 수목 관리 및 병해충 방제: 조경·산림 면허를 소지한 전문업체 의뢰

▢ 공원녹지과 위험수목 정비예산

구 분	사 업 비(천원)			
	2023	2024	2025	2026
소 계	**348,688**	**616,636**	**602,540**	**633,259**
공원기획	69,860	73,438	70,503	80,000
공원관리	50,460	49,790	50,268	51,000
조 경	139,188	222,199	200,664	217,259
수변조경	44,330	54,931	110,000	105,000
자연생태	44,850	216,278	171,105	180,000

▢ 공원녹지과 위험수목 정비실적

(단위: 주)

구 분	정비목록	정비연도			총 계 (3년치)
		2023	2024	2025	
총 계	**소 계**	**784**	**1,529**	**1,785**	**4,098**
	제 거	289	550	957	1,796
	가지치기	495	979	828	2,302
공원기획	**소 계**	**336**	**117**	**222**	**675**
	제 거	37	59	60	156
	가지치기	299	58	162	519
공원관리	**소 계**	**174**	**200**	**279**	**653**
	제 거	8	14	27	49
	가지치기	166	186	252	604
조 경	**소 계**	**143**	**792**	**394**	**1,329**
	제 거	128	216	314	658
	가지치기	15	576	80	671
수변조경	**소 계**	**71**	**121**	**364**	**556**
	제 거	71	121	284	476
	가지치기	-	-	80	80
자연생태	**소 계**	**60**	**299**	**526**	**885**
	제 거	45	140	272	457
	가지치기	15	159	254	428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7. 토론 요지 : “생략”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672호

발의일자 : 2026. 2. 24.
제 안 자 : 경제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용어의 통일성과 조문의 간결성을 위하여 조문을 수정함

○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맞추어 조문의 규정이 구체적이고 간결하도록 수정함

2. 수정내용

○ 용어의 통일을 위하여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안 제1조)

○ 상위 법령의 규정에 따르며 조문을 간결하게 수정함(안 제2조)

○ 상위 법령의 입법 취지에 따르며 정책 추진의 명확성과 조문의 간결성을 제고하도록 항·호·목을 조정하고 조문을 정비함(안 제4조, 제6조, 제7조, 제8조)

○ 내용이 구체적이고 정확하도록 별지 서식의 제목과 표현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제2호서식)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1조 중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을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한다.

제2조 중 “바람, 비, 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를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로,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를 “예상되어”로 한다.

제5조를 삭제하고, 제4조를 제5조로 하며,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적용한다.

1. 단독주택
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 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산림보호구역
2. 경제림육성단지 및 기업경영림
3. 대규모 사업 부지
4. 공공기관 관리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지가 조경의무면적이 설정된 대지인 경우 지원 이후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 제목 “(사업시행 및 지원)”을 “(지원 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을 “수목을 정비(제거 및 가지치기)”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를 “과정 중에”로, “위험수목 소유자”를 “수목 소유자”로 한다.

1. 죽은 수목

2. 풍수해를 입은 수목

3. 다음 각 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수목

가.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나. 부패 및 병충해로 인한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풍수해 발생 시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

제7조제1항 중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를 “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을 “위험수목”으로, “경우 수목전문가(”를 “경우”로, “나무병원 등)의”를 “나무의사 등에게 수목진료를 받고”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수목관리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 제목 “(지원신청 등)”을 “(지원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청에 대하여”를 “신청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로, “검토한 후”를 “검토하고,”로, “통지하여야”를 “통지해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진행될 수 있도록”을 “진행되도록”으로 한다.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수목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건물명)			
	소유자와의 관계 :			
신청 사항	위 치	지 번 : (지목:)		
		소유자 : (연락처:)		
	정 비 사 유			

위험수목 현 황					
연번	나무종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원내용	비고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위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 **동의(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 본인은 수목 소유주로서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조문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생활주변 위험 수목----------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바람, 비, 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 ---------- ---------- ---------- ---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 --- 예상되어 ---------- ---------- ----------.
<신 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적용한다. 1. 단독주택 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 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산림보호구역 2. 경제림육성단지 및 기업경영림 3. 대규모 사업 부지 4. 공공기관 관리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지가 조경의무면적이 설정된 대지인 경우 지원 이후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제4조 (생 략) 제5조(지원범위 및 제외)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	제5조 (원안 제4조와 같음) <삭 제>

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건축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해당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	제6조(지원 내용) ① ----------수목을 정비(제거 및 가지치기)----------. 1. 죽은 수목

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수목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2. 풍수해를 입은 수목
<신 설>	3. 다음 각 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수목 가.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나. 부패 및 병충해로 인한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풍수해 발생 시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과정 중에 ---------- 수목 소유자 ----------.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 수 ----------.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 ---------- 경우 ---------- 나무의사 등에게 수목진료를 받고 ----------.
<신 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수목관리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	제8조(지원 신청)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목 소유

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수목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 신청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 검토하고, ---------- 통지해야 -------.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 진행되도록 ---------- -----.

별표대비표

원 안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건물명)			
	소유자와의 관계 :			
신청사항	**위치**	지번 : (지목:)		
		소유자 : (연락처:)		
	정 비 사 유			

위험 수목 현황

연번	나무 종류	나무 높이 (m)	가슴 높이 지름 (cm)	지원 내용	비 고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등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동의서 1부.

수 정 안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건물명)			
	소유자와의 관계 :			
신청사항	**위치**	지번 : (지목:)		
		소유자 : (연락처:)		
	정 비 사 유			

위험 수목 현황

연번	나무 종류	나무 높이 (m)	가슴 높이 지름 (cm)	지원 내용	비 고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위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동 의 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 동의(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사유지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따른 주민 찬성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 동의(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 본인은 수목 소유주로서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거나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적용한다.

1. 단독주택

2.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3. 노인 및 어린이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1. 산림보호구역

2. 경제림육성단지 및 기업경영림

3. 대규모 사업 부지

4. 공공기관 관리 지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제1항에 따른 적용 대상지가 조경의무면적이 설정된 대지인 경우 지원 이후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보완하여 식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내용)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을 정비(제거 및 가지치기)할 수 있다.

1. 죽은 수목

2. 풍수해를 입은 수목

3. 다음 각 목의 위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수목

가.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

나. 부패 및 병충해로 인한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풍수해 발생 시 피해를 확산시킬 우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과정 중에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②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등에게 수목진료를 받고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수목관리 관련 기관·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 ①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수목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그 사실을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자가 수목 소유자와 동일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table>
<tr><td rowspan="3">신청인</td><td>성 명</td><td></td><td>연락처</td><td colspan="3"></td></tr>
<tr><td>주 소
(건물명)</td><td colspan="5"></td></tr>
<tr><td colspan="6">소유자와의 관계 :</td></tr>
<tr><td rowspan="10">신청

사항</td><td>위 치</td><td colspan="5">지 번 : (지목:)
소유자 : (연락처:)</td></tr>
<tr><td>정 비 사 유</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9">위험수목
현 황</td><td>연번</td><td>나무종류</td><td>나무높이(m)</td><td>가슴높이지름(cm)</td><td>지원내용</td><td>비고</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d></td><td></td><td></td></tr>
<tr><td colspan="5">※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td></tr>
</table>

위와 같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 **동의(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 본인은 수목 소유주로서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동호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2

발의연월일: 2026. 2. 12.

발 의 자: 이동호·윤석민·이성수·복진경·김현정·이호귀·김광심·이향숙·한윤수·우종혁·안지연·김형곤·손민기의원(이상 13인)

1. 제안이유

생활권 인근의 수목 중에는 병충해, 고사, 기울어짐 등으로 인해 강풍이나 집중호우 시 전도·낙하 위험이 높은 수목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험 수목은 개인 또는 공동 소유인 경우가 많아, 처리 비용 부담이나 소유주 간 의견 차이 등으로 인해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정의와 지원 기준을 마련하여,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 안전을 확보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정의 (안 제2조)

나.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강남구청 및 소유자의 책무 (안 제3조)

다.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및 지원 범위(안 제4조, 제5조)

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내용(안 제6조)

마.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신청에 관한 사항(안 제8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나. 예산조치 : 논의 필요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 주변 위험 수목의 신속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주택지 등 생활권 인근의 수목으로서 바람, 비, 병충해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이미 피해가 발생하여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

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
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
3. 수요조사, 우선순위 기준 및 지원 절차 등
4.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및 제외) 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범위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노인 및 어린이시설인 구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관리해야 하는 지역
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50세대 미만의 비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중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 기준 4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
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③ 「건축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24조에 해당

하는 조경 등 관련 법규 및 인·허가 조건 등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가. 죽은 나무나 마른 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

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수목

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수목

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 시행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

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 ① 제6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기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에 대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현장 확인 등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

필수 : □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 노유자시설

신청인	성 명		연락처	
	주 소 (건물명)			
	소유자와의 관계 :			
신청 사항	위 치	지 번 : (지목:)		
		소유자 : (연락처:)		
	정 비 사 유			

위험수목 현 황					
연번	나무종류	나무높이(m)	가슴높이지름(cm)	지원내용	비고

※가슴높이지름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높이 나무줄기의 지름
※지원내용은 제거, 가지치기 등 신청내용 기재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하여 태풍 등 재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위치도 및 현황사진 1부.
2. 동의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동 의 서

□ **민원인(대표자) 인적사항**

성 명	주 소	연 락 처	비 고

□ **동의(소유자 3분의 2이상이 동의하여야 합니다.)**

연번	성 명	주 소	서 명(인)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상기와 같이 사유지내 위험수목 정비(제거·가지치기)에 따른 주민 찬성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민원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강남구청장 귀하